

동작구의회공고 제2020-2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6월 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회장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법령 규정에 따라 정례회 기간에 결산안 승인을 위한 심사, 행정사무감사 실시,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처리하는바, 이에 정례회 운영의 효율성 및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회의일수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례회 회기를 연간 60일 이내로 규정(안 제3조)
- 나.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13일로 규정(안 제4조제2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회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50일”을 “60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15일”을 “13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회기)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4조에 따른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되 회기는 연간 <u>50일</u> 이내로 한다.</p> <p>② (생략)</p> <p>제4조(정례회 집회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 한다.</p> <p>1. (생략)</p> <p>2.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11월 <u>15일</u>에 집회한다.</p>	<p>제3조(회기) ①----- ----- ----- <u>60일</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정례회 집회일)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13일</u>-----.</p>